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주차관리과-11926
등록일자	2015.3.23.
결재일자	2015.3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차지도팀장	주차관리과장	안전교통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구청장
정희영	황선옥	김구연	조홍기	주윤중	03/25 신연희
협조자	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				

-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-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 및 조례 제정 계획

☐ 제정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○ 2010. 9. 13 「법제처 법령해석」

☐ 조례 주요내용

○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(제1조)

○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 및 교통민원 신고사항 심의·의결 (제2조)

○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(제5조)

○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(제11조)

☐ 행정사항

○ 입법예고 …… 구보 및 인터넷 게재

*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은 전면 폐지

강 남 구

(주 차 관 리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• 2010. 09. 13 「법제처 법령해석」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는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여야 함.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2010. 09. 13 「법제처 법령해석」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2015년 예산반영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강남구 주민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 : 〕 〔신규 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----- (○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----- (○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조례 : 용산구 등 15개구 - 규칙 : 강남구 등 1개구 - 방침 : 성동구 등 5개구 - 미설치 : 중구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변호사 자문문검토 완료

-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-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폐지 및 조례 제정 계획

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」을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민원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함.

Ⅰ 제정근거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□ 2010. 9. 13 「법제처 법령해석」

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는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여야 함.

Ⅱ 주요 제정내용

□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(제1조)

□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 및 교통민원 신고사항 심의·의결 (제2조)

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운수업체 및 관계조합 종사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(제3조)

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(제5조)

□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(제7조)

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(제11조)

Ⅲ 규칙 폐지

□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폐지

- 폐지사유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복된 내용의 규칙은 폐지
- 주요내용 : 당해규칙 전면 폐지

Ⅳ 추진일정

□ 입법예고 …… 2015. 03월

□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…… 2015. 03월

□ 법률 타당성 검토의뢰 …… 2015. 03월

□ 입법안 확정방침 …… 2015. 04월

□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…… 2015. 04월

□ 구의회 상정 …… 2015. 05월

□ 공포 …… 2015. 05월

Ⅴ 행정사항

□ 입법예고 …… 구보 및 인터넷 게재

붙임 : 1.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2.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. 끝.